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3. 12. 1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60호
- 라. 상정일자 : 2003. 12. 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. 12. 31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. 12. 31까지로 연장하고,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, 일부감면 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감면축소 등 관련법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
 - 도시계획세 전액면제⇒ 100분의 50경감으로 함.
-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⇒ 부동산으로 확대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
 - 현행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
-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 감면 폐지

-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 : 5년⇒3년
-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전문 개정
-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
 - 현행 과밀억제권역에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포함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
 - 전액면제⇒100분의 50 경감
-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
 - 자동차폐차업소 ⇒자동차폐차영업소(안 제2조 및 제3조)
 - 노인복지시설 ⇒ 노인복지법 제31조
 - 박물관및미술진흥법 ⇒ 박물관및미술관광진흥법 제16조
 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⇒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·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의 경우 2003. 10. 16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임.
-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- 지방세 과세 면제·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
2003.10.16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
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임.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, 상위 법령에
저촉되지 아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